

「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5월 24일

나. 발 의 자: 이명희 · 김낙관 · 김영태 · 김원섭 · 김재우 ·
김정도 · 김춘남 · 박교상 · 박세채 · 소진혁 ·
신용하 · 양진오 · 정지원 의원(13인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5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6월 4일

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이 명 희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노인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노인학대예방을 목적으로 함.

다. 주요내용

- 시장의 책무 및 시설장의 책무(안 제3조~제4조)

- 인권지킴이단 관련(안 제5조~제8조)
- 교육 및 예산지원(안 제9조~제10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노인복지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노인인권 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해 규정을 제정하고자 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제 정 안
<p>제5조(인권지킴이단 구성) ① 시장은 시설 입소노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(이하 “인권지킴이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인권지킴이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인권지킴이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 인권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역주민 대표(통·이장 등) 2. 보호자 대표,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, 공무원, 종교인, 변호사, 의료인 3. 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종사자,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

4. 노인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

⑤ 위촉된 인권지킴이단원은 법 제51조의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⑥ 인권지킴이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.

- 안 제5조에 따라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할 시 노인 인권과 복지 등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단원을 모집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.
- 집행기관에서는 노인인권지킴이단의 운영 계획 수립시 세부적인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형식적인 시설점검이 아닌 내실있는 모니터링과 인권 관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, 단원의 시설 점검, 인권 활동, 관계기관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.
- 또한, 정기적으로 시설 점검 등 활동을 추진하는 단위들에 대한 활동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